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 의 자 : 전재수 · 박수현 · 임오경  
오세희 · 허 영 · 김정호  
박민규 · 김태선 · 임미애  
송기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위 ‘K-컬처’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. 이 같은 추세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재인식하며 고국이 자랑스러운 글로벌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음.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기부를 통해 고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원-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국내로의 외화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.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

기부를 하더라도 국내 발생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, 이들에 대한 답례품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제공 한도를 상향시켜 고향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로부터의 달러 유입을 통해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 등).

##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화 등으로 기부를 한 경우로서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상당액의 범위에서 이를 갈음하여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적용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1.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
2. 「재외동포기본법」에 따른 재외동포

④ 제1항에 따른 외화 등의 범위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기부자에 대한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, 명예 주민증 수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, 명예 주민증 수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③ (생략)

<신설>

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⑥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9조의2(기부자에 대한 지원) ①

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, 명예 주민증 수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, 명예 주민증 수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